



# 정밀안전검사 승강기 안전부품 추가설치 이행기간 연장 안내

[가] 또는 [나]에 따라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

[가]와 [나]의 **중복적용은 불가**합니다.

관련규정 : 「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」 제13조제3항제2호 및 부칙 제2조제3항

## ☑ 이행기간의 연장

### [가]

공동주택,  
집합건물  
2/3이상  
서면동의

- √ 적용대상 : 공동주택, 집합건물
- √ 연장기간 : 3년
  - 24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네 번째 받는 때까지
- √ 연장조건
 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
- √ 제출서류 : 서면동의서
  - 건물 및 승강기정보, 동의내용, 전체인원 및 동의인원, 대표자의 직인 또는 서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  - [승강기민원24]-[행정민원신청]-[정밀안전검사 관련 서면동의서 제출]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[나]

[가]의  
적용을 받지  
않은 경우

## 1단계

코로나 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이행기간 연장

- √ 적용대상 : [가]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
- √ 연장기간 : 최대 1년6개월
  -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최대 1년 6개월\* 이내 도래하는 안전검사 또는 확인검사 시까지
  - 단, 종전 코로나19로 착공시기 지연에 따라 1년 연장한 승강기는 6개월 이내 도래하는 안전검사 또는 확인검사 시까지
- √ 연장조건
  - 안전관리자 일상점검 실시 및 기록 자체 보관
  - 이행계획서 검사기관 제출
  - 일상점검표, 이행계획서는 [공단홈페이지]-[승강기정보]-[서식자료]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
**[나]**  
**[가]의**  
**적용을 받지**  
**않은 경우**

## 2단계 대상별 여건에 따른 이행기간 추가 연장

√ 1단계 연장기간이 종료되고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,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.

- △ 단, ①~⑤ 중 2개 이상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과 중도 사유변경은 불가
- √ 2단계 연장 시 다음 정기검사는 정밀안전검사로 대체되며,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분기별 추가 실시하여야 하고, 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을 실시 후 기록하고 자체보관하여야 합니다.

### ① 전체교체 예정 승강기

- 호환되는 부품이 없는 승강기 등으로 전체교체를 예정하는 승강기
- 이행계획서 검사기관 제출
- 최대 1년 추가 연장 가능

### ② 부분교체 예정 승강기

- 기존 부품과의 연계성·안전성 등으로 의무설치 부품(8종) 외에 주요부품(구동기·제어반)까지 함께 교체해야 하는 승강기
- 이행계획서 검사기관 제출
- 6개월 1회 추가 연장하고 의무설치 부품을 일부 설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가능
- △ 엘리베이터는 ①~④, 에스컬레이터(무빙워크)는 ①~③ 중 어느 하나의 설치가 확인되어야 6개월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.

엘리베이터	① [브레이크시스템]
	② [상승과속방지장치 및 개문출발방지장치]
	③ [승강장문 조립체, 비상가이드,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,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]
	④ [자동구출운전수단]
에스컬레이터 (무빙워크)	① [주 브레이크]
	② [보조브레이크 및 과속·역행방지수단]
	③ [스커트 디플렉터 및 핸드레일시스템]

### ③ 재개발·재건축으로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의 승강기

- '관리처분계획인가'가 고시된 승강기
- 이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증빙서류 검사기관 제출
- 최대 1년 추가 연장 가능

### ④ 국민의 이동 편의 보장이 필요한 현장의 승강기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에 설치된 승강기,
- 「건축법」에 따른 (준)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,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승강기,
-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른 필수공익사업 건축물의 승강기
- 이행계획서 및 건축물 증빙서류(건축물대장 등) 검사기관 제출
- 최대 1년 추가 연장 가능

### ⑤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현장의 승강기

- 부품설치를 위해 건축물 수선이 필요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승강기 등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합니다.
- 이행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사기관 제출
-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가능